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 |
|----------|------|
| 의안 번호 | 1171 |
|----------|------|

2023년 9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 상정일자 : 제32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 9월 4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1.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임.
-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관련 전문법인 또는 단체의 기술과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로,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내용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 위탁기간 : 2024.1.1.~2026.12.31.(3년간)
 - ※ 현 수탁법인 :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위탁금액 : 271백만원('23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위탁사무 내용
 - 안전체험용 교육 차량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문 예방교육 실시
 - 아동 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 사업의 홍보 및 사업 추진 관련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협력
 -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
 - 교육용 차량(서울시 소유 3대 등) 관리·운영 및 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 민간위탁 필요성
 -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아동”과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적인 교육 인력과 장비,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의 위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제1항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1. 12. 21.>

1. 성폭력 예방
-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제1항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제9호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그 밖에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2024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완료(적정)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사무에 대한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민간위탁조례」”라 함)제4조의3제1항¹⁾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함)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시장이 위탁하려는 사무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안전체험용 교육 차량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방문 예방교육 실시
 -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개선
 - 사업의 홍보 및 사업 추진 관련 학교 및 관계기관과의 연계 협력
 - 교육내용에 대한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 실시(만족도 조사 등)
 - 교육용 차량(서울시 소유 3대 등) 관리·운영 및 기타 사업추진을 위해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²⁾ 및 제31조제1항³⁾과 서울특별시 「어린이들이 안전한 서울만들기 종합계획」

1)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의회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제 4조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제2조제4호에 따른 재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3.25, 2021.12.30>

2) 「아동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①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교육대상 아동의 연령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

(시장방침 제384호)에 따라 2002년부터 시행해 온 사업임.

- 동 사업 운영은 처음 시행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해 왔고, 사업의 운영 및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음.

<사업 운영 현황 및 실적>

| 교육장비 | 연간사업비 (천원) | 운영인력 | 위탁기간 | 운영주체 |
|---|---------------|---------------------------------------|-------------------------|-----------------------------|
| 차량 4대 (가정·재난안전 1, 감염병예방·생활안전 1, 교통·보행안전 2) | 271,192 | 7명 (총괄책임자 1, 교육강사 3, 차량관리 3) | '21.1.1.~ '23.12.31. | (재)한국어린이 안전재단 (대표 고석) |

| 연도 | 방식 | 대 상 | 교육횟수 | 교육 수료인원 | | |
|------|-----|---------------------|--------|---------|-------------------|-------------------|
| | | | | 계 | 남 | 여 |
| 2022 | 대면 | 가원초등학교 외 7기관 | 1,016회 | 14,090명 | 7,301명 (51.8%) | 6,789명 (48.2%) |
| | 온라인 | 경인유치원 외 6 | 18회 | 1,837명 | 894명 (48.7%) | 943명 (51.3%) |
| 2021 | 대면 | 가주초등학교 외 33기관 | 1,170회 | 10,594명 | 5,481명 (51.7%) | 5,113명 (48.3%) |
| | 온라인 | 거원초 병설유치원 외 13기관 | 26회 | 1,238명 | 629명 (50.8%) | 609명 (49.2%) |
| 2020 | 대면 | 대왕초등학교 외 19개기관 | 209회 | 2015명 | 1,004명 (49.8%) | 1,011명 (50.2%) |

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대상이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 같은 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하여금 제1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21. 12. 21.>

1. 성폭력 예방
- 1의2. 아동학대 예방
2.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3. 감염병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등 보건위생관리
4. 재난대비 안전
5. 교통안전

<민간위탁 추진 현황>

- (사)한국안전생활교육회 최초위탁 : 2002. 5. ~
-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무위탁 : 2008. 3. ~ 현재
 - 1회차 : 2008년 3월~2010년 3월(2년)
 - 2회차 : 2010년 3월~2012년 3월(2년)
 - 3회차 : 2012년 3월~2014년12월(2년10개월)
 - 4회차 : 2015년 1월~2017년12월(3년)
 - 5회차 : 2018년 1월~2020년12월(3년) ※시의회 동의(17.09.06)
 - 6회차 : 2021년 1월~2023년12월(3년)

- 동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2023년 12월말로 만료될 예정으로, 기존과 같이 민간에 위탁(재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바, 본 동의안은 이의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2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행정권의 포기과 공익성 실현의 왜곡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치국가의 원리상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4)에서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
-
- 4)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해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5)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지원사업을 시장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민간위탁조례」 제4조6) 제1항제3호에 따르면 시장의 소관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분야의 고도의 전문기술을 요구하는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은 민간위탁 사무로서의 그 법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금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본 동의안은 법적인 측면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5) 「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제5조(어린이 안전보장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 3.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
 - 4. 어린이 안전보장에 필요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정비
 - 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6)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 ② 삭제

-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에 대한 사무는 해당분야의 노하우를 지닌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한다면 보다 질 높고 전문적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관리 및 공간에 대한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재정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다만 “2023년 제5차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회의에서 어린이안전 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음 시작했던 2002년과 비교하여 20년 이상 지난 현재 상황에서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를 요구한 바 있어 향후 위탁사무 운영 시 해당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임.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 | |
|----------|------|
| 의안 번호 | 1171 |
|----------|------|

제출년월일 : 2023년 8월 14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무임
- 나. 아동에 대한 안전교육 관련 전문법인 또는 단체의 기술과 전문성, 노하우를 활용하여 체험 위주의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사무로, 교육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명 : 어린이안전체험교실 운영
 - 서울시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보육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5~13세)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찾아가는 안전교육 실시
- 위탁기간 : 2024.1.1.~2026.12.31.(3년간)
 - ※ 현 수탁법인 : 재단법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위탁금액 : 271백만원('23년)
- 수탁기관 선정 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9호

○ 민간위탁 필요성

- 서울시 전역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안전교육으로, “아동”과 “안전교육”에 대한 이해와 경험, 전문적인 교육 인력과 장비, 기술을 보유한 전문기관에의 위탁이 필요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은 매년 재난대비 안전 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함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9호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운영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완료(적정)

※ 작성자 : 여성가족정책실 아동담당관 박 진 (☎ 2133-5180)